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 (제 회)	

화 학 안 전 관 리 체 계 효 율 화 를
위 한 3 개 법 령 의 일 부 개 정 에 관 한
대 통 령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환경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화학 안전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대응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각 법률 이행을 화학물질안전원, 국립환경과학원이 지원 중이나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된 법률의 이행 기관이 분리되어 효율적 업무 추진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 중인 화학물질 관리 관련된 업무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법령별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화학 안전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1조(「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등”을 “등(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및 유독물질의 지정에 한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공개”를 “공개(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및 유독물질의 지정 여부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법 제43조제1항제2호”를 “법 제43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 및 제2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2호 중 “제00000호”를 “제29413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

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평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운영실적 등의 보고 자료의 접수
2.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그 결과의 통지 및 자료의 제출 명령
3. 법 제31조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및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에 한한다)
4. 법 제42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여부에 한한다.)
5. 법 제42조의2제4호에 따른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연구 등 기술적 지원
6.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사용 승인 취소에 한정한다)
7.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관리대책의 마련
8.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회경제성분석서의 작성 및 위해성평가의 실시
9.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등(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2조(「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에 제2호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10. 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 등
의 고시

제3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8호 중 “국립환경과학원
장”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u>국립환경과학원장</u> 에게 위임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 ----- ---- <u>화학물질안전원장</u>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험 <u>기관의 평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운영실적 등의 보고 자료의 접수</u>	<삭 제>
10.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u>위해성평가, 그 결과의 통지 및 자료의 제출 명령</u>	<삭 제>
11. 법 제31조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한 <u>통보 등</u>	11. ----- ----- <u>등(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및 유독물질의 지정에 한한다)</u>
12. · 13. 삭 제	
14.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u>접수(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고된 경우만 해당</u>	14. ----- ----- ----- <u>화학물질안전원장</u> ----- -----

- 다)
15. 삭 제
16. 법 제42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
- 16의2. 법 제42조의2제4호에 따른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술적 지원
17.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등(법 제43조제1항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18.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
- 18의2. · 19. (생 략)
20.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 관리대책의 마련
21.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회경제성분석서의 작성 및 위해성 평가의 실시

-
16. ----- 공개(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및 유독물질의 지정 여부에 한한다)
- <삭 제>
17. -----

-----법 제43조제1항 제1호-----
18. -----

-----화학물질안전원장-----

- 18의2. · 19. (현행과 같음)
- <삭 제>
- <삭 제>

22. 대통령령 제0000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접수

<신 설>

22. ----- 제29413호 -----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평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운영실적 등의 보고 자료의 접수
2.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그 결과의 통지 및 자료의 제출 명령
3. 법 제31조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및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에 한한다)
4. 법 제42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사항 및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여부에 한한다.)

5. 법 제42조의2제4호에 따른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연구 등 기술적
지원

6.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법 제
19조제3항에 따른 사용 승인
취소에 한정한다)

7.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
관리대책의 마련

8.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회경
제성분석서의 작성 및 위해성
평가의 실시

9.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
· 검사 등(법 제43조제1항제1
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 ⑤ (생략)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p> <p>1. ~ 2의9. (생략)</p> <p><u><신설></u></p> <p>3. ~ 10. (생략)</p> <p>② ~ ④</p>	<p>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 ----- ----- -----.</p> <p>1. ~ 2의9. (현행과 같음)</p> <p><u>2의10. 법 제16조에 따른 유해 화학물질의 표시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의 고시</u></p> <p>3. ~ 10.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8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u>국립환경과학원</u>장에게 위임한다.</p> <p>1. ~ 17. (생략)</p> <p>18. 법 제50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u>국립환경과학원</u>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p> <p>18의2. ~ 24. (생략)</p> <p>② (생략)</p>	<p>제38조(권한의 위임) ① ----- ----- ----- <u>화학물질안전원</u>장-----.</p> <p>1. ~ 17. (현행과 같음)</p> <p>18. ----- -----<u>화학물질안전원</u>장----- -----</p> <p>18의2. ~ 2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6783